

부산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591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피고, 피항소인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올

담당변호사 강현주

변론 종결2022. 5. 11.

판결 선고2022. 6. 22.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9. 8. 선고 2017가합307 판결

환송전_판결부산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56653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3766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7,407,590원 및 그중 127,47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부터, 141,246,460원에 대하여는 2014. 1. 10.부터, 162,640,240원에 대하여는

2015. 3. 18.부터, 170,692,300원에 대하여는 2016. 9. 30.부터, 45,358,59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고 한다)의 개설자이다.

나. 피고는 2000. 11.경 이 사건 도매시장 내 일부 토지에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2층 건물(건축 연면적 합계 약 1,094㎡)을 신축하였다.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명칭이 'C도매시장 쓰레기처리동', 주 용도가 '쓰레기처리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처리장'이라고 한다).

다. 피고 건설본부장은 2000. 10. 11. 낙동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 이 사건 처리장에 청과, 무, 배추류 등 과채류 쓰레기만을 선별하여 파쇄한 후 압착 및 탈수하여 감량화하는 장비를 설치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C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하 '관리사업소장'이라고 한다)은 위 감량화 장비에 의한 처리대상 폐기물과 관련하여, ① 2005. 1. 17. '이 사건 도매시장 발생 폐기물(청과, 무, 배추류 등)'에서 '이 사건 도매시장 발생 폐기물(청과, 무, 배추류 등) 및 D시장 발생 폐기물(청과, 무, 배추류 등)'로 확대·변경하는 승인을, ② 2011. 10. 20. 폐기물 수거 지역을 '이 사건 도매시장 발생 폐기물(청과, 무, 배추류 등), D시장 발생 폐기물(청과, 무, 배추류 등)'에서 '부산 시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청과, 무, 배추류 등)'로 재차 확대·변경하는 승인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받았다.

마. 관리사업소장은 이 사건 처리장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2012. 12. 27. 최고가 입찰자인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바. 관리사업소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리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3년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5년간의 각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이 사건 처리장에서 도매시장 내 '과채류 쓰레기'에 대한 감량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들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음은 물론, 이 사건 도매시장 외부(D시장을 포함한 부산 시내)에서 발생한 과채류 쓰레기도 반입하여 함께 처리하면서 해당 과채류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리장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아.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4년간 이 사건 도매시장 외부에서 반입하여 이 사건 처리장을 통하여 처리한 과채류 쓰레기량은 해당 기간 전체 과채류 쓰레기 처리량 중 약 26% 정도에 이른다.

자. 관리소장은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리장 사용에 대한 매년 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관리소장에게 시설사용료로 2013년분 127,470,000원, 2014년분 141,246,460원, 2015년분 162,640,240원, 2016년분 170,692,300원, 2017년 1분기분 45,358,590원 등 합계 647,407,5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 6, 7호증, 을 제5, 8,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8. 23. 농림수산물식품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오물처리장'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필수시설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청과부류의 부수시설로 각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2012. 8. 23. 개정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8. 23.

농림수산물식품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44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필수시설 중 '오물처리장'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경하면서 청과부류의 부수시설로 규정하였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삭제하였다. 원고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이 사건 처리장은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에서 필수시설로 정한 '쓰레기 처리장'에 해당한다.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42조,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리장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원고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리장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징수한 2013년분부터 2017년 1분기분까지 시설사용료 합계 647,407,5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리장은 이 사건 도매시장뿐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서 발생한 과채류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일 뿐 농수산물유통법상 도매시장의 필수시설인 쓰레기 처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처리장이 농수산물유통법상 필수시설인 쓰레기 처리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리장이 농수산물유통법상의 필수시설인 '쓰레기 처리장'인지 여부

1)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 제1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사용료(제1호)를 징수할 수 있고,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료(제2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외에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별표 2]에서 열거하는 '필수시설(쓰레기 처리장이 그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음), 부수시설, 기타시설' 중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부수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2014. 10. 15.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이 재차 개정되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가 추가되었다.

2) 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위 농수산물유통법 관련 규정들은,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 사용료와 별도로 도매시장 내 상인 등에게 시설 사용료 명목 등으로 비용을 직접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리장은 그 자체로 원고가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과채류 쓰레기는 물론 이 사건 도매시장과 무관하게 부산 시내에서 발생하는 과채류 쓰레기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농수산물 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리 목적의 폐기물업체로서 이 사건 처리장을 이용하여 부산 시내에서 발생하는 과채류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수익을 얻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농수산물유통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리장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 및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 쓰레기 처리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리장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쓰레기 처리장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법원의 원심판결 파기에 따라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제2항),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리장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민기

판사임상민

판사김영환

별지